

여객운송 규정

(제정 2003. 3. 14 규정 제 25호)
(개정 2004. 3. 10 규정 제 47호)
(개정 2004. 4. 29 규정 제 52호)
(개정 2005. 9. 26 규정 제 66호)
(개정 2006. 7. 14 규정 제110호)
(개정 2007. 3. 21 규정 제125호)
(개정 2007. 8. 14 규정 제127호)
(개정 2011. 6. 24 규정 제198호)
(개정 2013. 3. 29 규정 제232호)
(개정 2013. 9. 26 예규 제 25호)
(개정 2016. 7. 25 규정 제279호)
(개정 2017. 8. 10 규정 제294호)
(개정 2017. 12. 27 규정 제301호)
(개정 2018. 9. 18 규정 제316호)
(개정 2019. 7. 3. 규정 제33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지하철 여객운송 및 타 운송기관과의 여객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사의 여객운송과 공사 및 타 운송기관과의 여객운송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개정 2006. 7. 14>)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이라 함은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열차”라 함은 여객을 운송하는 전동차를 말한다.

3. “승차권”이라 함은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증표로서 보통권, 교통카드, 단체권 및 우대권 등을 말한다. <개정 2004. 3. 10, 2005. 9. 26, 2007. 8.14>
4. “승차권의 표시”라 함은 승차권의 앞면 및 뒷면에 인쇄된 내용과 IC chip에 입력된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04. 3. 10>
5. “개표 또는 집표”라 함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차권을 개 집표기에 투입하거나 인식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 7. 14>
6. “여행개시”라 함은 여행을 하고자 하는 역에서 승차권을 개표하는 것을 말한다.
7. 삭제 <개정 2004. 3. 10, 2007. 8. 14>
8. “신분증”이라 함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수강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독립유공자증, 상이등급이 명시된 국가유공자증,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인등록증, 광주민주유공자증 또는 청소년증 등을 말한다. <개정 2004. 3. 10, 2004. 4. 29>
9. 삭제 <2004. 3. 10>
10. “어린이”라 함은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자 또는 초등학교 학생과 제24조제2항에 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7. 12. 27>
11. “노인”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정한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04. 3. 10>
12.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한 자를 말한다.
13.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1항에 정한 자를 말한다.
14. “광주민주유공자”라 함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4. 3. 10, 개정 2006. 7. 14>
15. 삭제 <신설 2004. 3. 10, 2006. 7. 14, 2018. 9. 18>
16.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만18세 초과 만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신설 2004. 4. 29, 개정 2011.6.24., 2018. 9. 18>

17. “카드사업자”라 함은 교통카드를 발행하여 여객에게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신용카드업자 또는 교통카드 발행사업자로서 공사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과 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7. 8. 14>

18. “환승”이라 함은 도시철도와 버스간 갈아타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 8. 14>

19. “버스”라 함은 광주광역시 준공영제의 적용을 받는 시내버스와 환승시 환승운임이 적용되는 버스를 말한다.<신설 2007. 8. 14, 2017. 12. 29>

제4조(승차권의 구입 및 소지) 여객은 그 승차에 유효한 승차권을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14>

제5조(운임의 선급) ① 여객이 승차권을 구입할 경우에는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소정의 운임을 먼저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카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 7. 14, 2007. 8. 14>

1. 삭제 <개정 2006. 7. 14>

2. 삭제 <개정 2006. 7. 14>

② 제1항에 의한 자기앞수표는 추심료가 발생하지 않는 금융기관에서 발행된 것으로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한다. <개정 2004. 3. 10>

제6조(계약의 성립시기 및 적용) ① 여객운송계약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여객은 동규정과 동규정 시행내규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3. 10, 2005. 9. 26, 2007. 8. 14, 2017. 12. 27>

1. 여객이 소정의 운임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한 때<신설 2017. 12. 27>

2. 교통카드 이용 여객은 교통카드로 개표한 때<신설 2017. 12. 27>

3. 우대권 사용자는 해당 승차권을 발급받은 때<신설 2017. 12. 27>

4.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는 보호자가 개표를 한 때<신설 2017. 12. 27>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이 성립한 때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교통카드의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통카드 발급기관과 소지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04. 3. 10, 2005. 9. 26, 2007.

8. 14>

제7조(여객운송의 조정) ① 사장은 여객운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여객운송을 조정할 수 있다.

1. 승차권의 판매역, 판매장소, 판매시간 또는 판매방법의 제한, 승차권의 판매정지
2. 승차구간 또는 열차운행의 제한, 열차운행의 정지
3. 운임할인의 제한 또는 정지
4. 휴대품의 제한
5. 교통카드의 이용 <개정 2004. 3. 10, 2005. 9. 26, 2007. 8. 14>

② 여객운송의 조정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관계역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경우에는 안내방송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8>

제8조(기간의 계산)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초일은 시간에 불구하고 이를 1일로 계산한다.

제9조(운임의 감면) 법령으로 운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또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취급한다.

1.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정한 노인 및 광주시 체류 외국인 중 만 65세 이상 영주권 취득자는 무임으로 한다. <개정 2004. 3. 10, 2013. 3. 29>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1항에 정한 자는 무임으로 한다.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2항에 정한 자는 무임으로 한다.<개정 2006. 7. 14>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한 장애인은 무임으로 한다.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그 보호자 1인도 무임으로 한다.<개정 2019.

7. 3>

5.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운임 및 요금의 단수계산) 운임 및 요금을 받을 경우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때에는 5원 미만은 버리고 5원 이상은 10원으로 한다.

제11조 삭제 <2004. 3. 10>

제12조 삭제 <2004. 3. 10>

제2장 승차권의 판매

제 1 절 통 칙

제13조(승차권의 종류) 승차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권 : 일반보통권, 할인보통권<개정 2011. 6. 24, 2016. 7. 25>
2. 삭제 <2004. 3. 10>
3. 단체권
4. 우대권
5. 교통카드

가. 선불교통카드 : 일반, 청소년, 어린이 <개정 2004. 3. 10, 2005. 9. 26, 2007. 8. 14, 2011. 6. 24, 2016. 7. 25, 2017. 12. 27>

나. 후불교통카드 : 일반 <신설 2007. 8. 14, 개정 2011. 6. 24, 2017.12. 27>

다. 우대 교통카드 : 경로, 장애인, 유공자 <신설 2017. 12. 27>

제14조(승차권의 판매 및 발급장소) ① 승차권은 역의 매표소 창구에서 직원이 판매 또는 발급하거나 역구내에 설치된 승차권 자동발매기에 의하여 무인판매 한다.

②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승차권 판매소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승차권의 판매 및 발급시기) ① 승차권을 판매하고 발급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권 : 통용일과 관계없이 판매 <개정 2004. 3. 10>
2. 단체권 : 통용일 또는 통용일 이전에 판매
3. 우대권 : 통용일에 발급

② 승차권을 판매하고 발급하는 시간은 그 역을 떠나는 첫번째 열차의 승차에 필요한 시각부터 마지막 열차의 승차에 필요한 시각까지로 한다.

제16조(승차권의 판매 및 발급범위) ① 승차권은 공사의 어느 역에서나 유효한 것을 판매하고 발급한다.

② 운임정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장과 당해 운송기관의 대표자가 협약으로 정한다.

제17조 삭제 <2005. 9. 26>

제 2 절 승차권의 판매 및 발급

제18조(보통권의 판매) ① 보통권은 여객이 지하철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에 1회 승차할 것을 청구할 때에 판매한다. <개정 2006. 7. 14>

② 어린이와 제9조제5호에 의하여 사장이 운임의 일부를 감면한 여객에게는 할인보통권을 판매한다. <개정 2006. 7. 14, 2011. 6. 24, 2016. 7. 25>

제19조(교통카드의 판매 <개정 2005. 9. 26, 2007. 8. 14>) 교통카드는 카드사업자(카드사업자와 제휴한 기관 포함)가 발급 또는 발매하며, 무기명 선불교통카드는 공사의 역구내에서 판매하거나 충전할 수 있으며, 일반 선불 교통카드는 일반에게, 어린이 선불교통카드는 어린이에게 판매하며, 청소년 선불교통카드는 해당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판매한다. <개정 2004. 3. 10, 2005. 9. 26, 2007. 8. 14, 2018. 9. 18>>

제20조(단체권의 판매) ① 단체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인 이상의 여객이 동일한 구간 및 경로를 여행하는 경우로써 그 단체의 대표자가 신청하였을 때에 판매한다. <개정 2006. 7. 14>

1. 청소년 단체<개정 2011. 6. 24>

청소년, 보호자 또는 교사로 구성된 단체로서 수학, 훈련 기타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교사 또는 청소년의 대표자가 인솔하는 경우에 판매한다. <개정 2004. 4. 29, 2011. 6. 24>

2. 보통단체

제1호 이외의 여객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책임있는 대표자가 인솔하는 경우에 판매한다.

② 유아단체를 책임있는 교사 또는 보호자가 인솔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판매한다.

제21조(우대권의 발급) 제9조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 운임의 전액 감면 대상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였을 때에는 우대권을 발급한다.

제3장 여객운임

제1절 통칙

제22조(여객운임의 종류) 여객운임의 종류와 그 승차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여객운임 <개정 2007. 8. 14>

가. 일반 보통여객운임 : 일반 보통권

나. <신설 2011. 6. 24, 삭제 2016. 7. 25>

다. 어린이 보통여객운임 : 할인 보통권

2. 교통카드여객운임 <개정 2004. 3. 10, 2005. 9. 26, 2007. 8. 14>

가. 일반교통카드여객운임 : 일반 선불(후불)교통카드

나. <개정 2011. 6. 24, 삭제 2016. 7. 25>

다. 청소년교통카드 여객운임 : 청소년 선불(후불)교통카드<개정 2011. 6. 24>

라. 어린이교통카드여객운임 : 어린이 선불교통카드

마. 우대 교통카드 여객운임 : 우대 선불(후불)교통카드<신설 2017. 12. 27>

3. 단체여객운임 : 단체권

4. 우대여객운임 : 우대권

제23조(여객운임의 적용) ① 여객운임은 여행개시역을 기준으로 하여 승차거리와는 상관없이 균일한 요금을 적용하며, 여객운임의 부과기준은 제22조 제1호의 보통여객운임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4. 3. 10, 2006. 7. 14, 2007. 8. 14, 2017. 12. 27>

② 삭제 <2004. 3. 10>

③ 삭제 <개정 2004. 3. 10, 2007. 8. 14>

④ 여객운임의 산출을 위한 역간 거리표는 『별표 1』 과 같다.

제24조(여객의 연령별 구분) ① 여객의 연령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 아 : 만 6세 미만의 자 <개정 2007. 8. 14>
2. 어린이 :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자 (다만, 만 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교 학생은 어린이로 본다.) <개정 2007. 8. 14>
3. 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하여 운임이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18세 초과 만24세 이하인 학생은 청소년으로 본다.<신설 2011. 6. 24, 개정 2018. 9. 18>
4. 일 반 : 만 19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자 <개정 2007. 8. 14, 2011. 6.24>
5. 노 인 : 만 65세 이상의 자 <개정 2007. 8. 14>

② 제1항제1호에 의한 유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로 보아 어린이운임을 적용한다.

1. 유아가 단독으로 여행할 때
2. 삭제 <2007. 8. 14>
3. 유아가 단체로 여행할 때

제 2 절 여객운임

제25조(여객운임) 여객운임의 종류별 여객운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8. 14, 2011. 6. 24, 2016. 7. 25, 2017. 12. 27>

구 분		금 액	승 차 권
보통여객운임	일반·청소년	1,400원	일 반 보 통 권
	어린이	500원	할 인 보 통 권
교통카드운임	일 반	1,250원	선불(후불)교통카드
	청소년	900원	선불교통카드
	어린이	500원	선불 교통 카드

제26조(전자화폐운임 <개정 2005. 9. 26>) 삭제 <2007. 8. 14>

제27조(단체여객운임) 단체여객운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20조에 의하여 단체권을 판매할 때에는 제25조에 정한 교통카드운임을 다음과 같이 할인한다.<개정 2004. 4. 29, 2011. 6. 24, 2016. 7. 25>

종 별	구 분	할인율
가. 어린이·청소년단체	(1) 어린이	1 할
	(2) 청소년	1 할
	(3) 교사 및 보호자	1 할
나. 보통단체	어린이 및 청소년 이외의 자	1 할

2. 단체여객운임의 계산은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

가. 어린이단체여객운임은 전 승차구간에 대한 어린이 교통카드운임에서 제1호에 의한 단체별 할인금액을 차감하여 단체인원을 곱한 금액<개정 2004. 4. 29, 2011.6.24., 2016. 7. 25>

나. 청소년 단체여객운임은 전 승차구간에 대한 청소년 교통카드운임에서 제1호에 의한 단체별 할인금액을 차감하여 단체인원을 곱한 금액 <개정 2004. 3. 10, 2004. 4. 29, 2011. 6. 24, 2016. 7. 25>

다. 보통단체여객운임은 전 승차구간에 대한 일반교통카드운임에서 제

1호에 의한 단체별 할인금액을 차감하여 단체인원을 곱한 금액
<신설 2011. 6. 24, 개정 2016. 7. 25>

라. 일반과 청소년 또는 어린이가 혼승할 경우의 단체여객운임은 일반, 청소년, 어린이별로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개정 2004. 4. 29, 2007. 8. 14, 2011. 6. 24>

마. 왕복단체여객운임은 단수 처리한 단체편도여객운임을 2배한 금액

3. 인솔자는 각 단체별로 20명이상이 되었을 때 1명으로 하고 20명을 더할 때에는 1명씩 더하여 운임을 면제한다.

제28조(우대여객운임) 제9조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한 운임의 전액 감면 대상자에 대하여는 무임으로 한다.

제 4 장 승차권의 효력

제 1 절 통 칙

제29조(승차권의 사용조건) ① 승차권에 승차인원을 기재한 것을 제외하고는 1인이 1매를 승차권의 표시사항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승차권을 사용할 수 있다.

1. 일반보통권을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2. 일반교통카드를 청소년 및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개정 2004. 3. 10, 2004. 4. 29, 2005. 9. 26, 2007. 8. 14, 2017. 12. 27>

3.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구간보다 적은 운임구간을 사용할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운임의 차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차액의 반환을 청구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

제30조(통용기간의 기산일) 삭제 <개정 2006. 7. 14>

제31조(승차권 효력의 특례) ① 어린이·청소년 교통카드는 사용 중에 신분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 3. 10, 2004. 4. 29, 2005. 9. 26, 2007. 8. 14, 2017. 12. 27>

② 개표한 승차권은 제32조에 의한 종류별 통용기간이 경과된 경우라도 계속 여행할 경우에는 그 승차권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2004. 3. 10>

제 2 절 승차권의 효력

제32조(통용기간) 승차권의 통용기간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권 : 개표후 집표시까지 2시간
2. 삭제 <2004. 3. 10>
3. 단체권 : 그 때마다 따로 지정
4. 우대권 : 발급당일
5. 교통카드 : 카드의 유효기간 내 또는 남은 금액이 이용구간 보통운임 이상인 경우 개표 후 집표까지 2시간 <개정 2004. 3. 10, 2005. 9. 26, 2007. 8. 14>

제33조(재승차의 금지) 여객이 여행개시 후 승차권의 통용기간 중에 운임 구간내의 도중역에서 내려 집표기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다시 승차할 수 없다.

제34조(신분증의 휴대) 청소년 교통카드, 우대권 또는 할인승차권을 사용하는 여객은 어린이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0, 2004. 4. 29, 2005. 9. 26, 2006. 7. 14, 2007. 8. 14, 2018. 9. 18>

1. 청소년 교통카드 : 청소년증 또는 학교의 장이 발행한 학생증이나 등교증명서<개정 2004. 3. 10, 2004. 4. 29, 2005. 9. 26, 2007. 8. 14, 2018. 9. 18>
2. 우대권, 우대교통카드<개정 2018. 9. 18>
 - 가. 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나.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상이등급이 명시된 국가유공자증, 상이군경회원증
 - 다.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라. 광주민주유공자 : 광주민주유공자증 <신설 2004. 3. 10>
3. 할인승차권 등 : 신분에 상당한 증명서

제35조(승차권을 전도무효로 하여 회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승차권을 승차권에 입력된 구간을 여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수한다. 다만, 교통카드는 승차한 구간의 운임을 공제한다.

<개정 2006. 7. 14, 2017. 12. 27>

1. 교통카드 이외의 승차권을 소지하고 도중역에 내려 집표기 밖으로 나갈 때 <개정 2004. 3. 10, 2005. 9. 26, 2007. 8. 14>
2. 제60조에 의한 휴대금지품이나 제61조에 의한 휴대제한품을 휴대하고 승차하였을 때
3. 철도안전법 제50조에 의하여 개집표기 밖으로 퇴거 당하였을 때 <개정 2006. 7. 14>

제36조(승차권을 무효로 하여 회수할 경우) 여객이 소지한 승차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여 회수한다.

<개정 2006. 7. 14>

1. 승차권의 표시사항을 변조하였을 때
2. 삭제 <2017. 12. 27> <개정 2007. 8. 14>
3. 삭제 <2017. 12. 27> <개정 2004. 3. 10, 2004. 4. 29, 2005. 9. 26, 2007. 8. 14>
4. 통용기간이 종료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5. 삭제 <2017. 12. 27> <개정 2004. 3. 1, 2004. 4. 29, 2005. 9. 26, 2007. 8. 14>
6. 기타 부정승차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때

제 3 절 승차권의 검사 및 반납

제37조(승차권의 검사) ① 여객이 여행을 개시할 때에는 승차하고자 하는 역에서 개표기에 의하여 승차권의 개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개표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개표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단체권의 경우에는 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는 외에 관계 직원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승차권을 제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차권이 신분증 등의 휴대를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그 증명서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38조(승차권의 반납) 여객은 여행을 종료하여 집표기 밖으로 나갈 때

에는 승차권(교통카드 제외)을 역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집표기에 의하여 집표된 것은 이를 반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7. 14, 2007. 8. 14>

제5장 승차권의 서식

제39조(승차권의 표시사항) ① 승차권에는 종류에 따라 다음 사항중 필요한 내용이 표기되거나 또는 검색되어져야 한다. <개정 2004. 3. 10>

1. 승차권 : 승차권명, 승차권번호, 승차권종류, 승차권할인, 매표일(만기일), 승차역, 하차역, 승차시간, 하차시간, 교통지갑거래횟수, 거래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 <개정 2004. 3. 10, 2006. 7. 14>
2. 승차권 뒷면 : 사용상 유의사항
3. 삭제 <2004. 3. 10>

② 승차권에 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제1항의 표시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승차권의 개집표시 정보내용) <개정 2006. 7. 14> 승차권을 개표기로 개표를 하거나 집표기로 집표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 중 필요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개표시 : 개표역 번호, 개표연월일시분, 사용잔액, 기타 필요한 사항 <개정 2005. 9. 26, 2006. 7. 14>
2. 집표시 : 집표역 번호, 집표연월일시분, 사용잔액, 기타 필요한 사항 <개정 2005. 9. 26, 2006. 7. 14>

제41조(승차권의 색상 및 표시사항 보충) 승차권의 색상 및 무늬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표시내용의 보충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제42조(승차권의 서식) 승차권의 규격, 재질 및 단체권의 서식 등 승차권의 서식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장 여객운송

제 1 절 통 칙

제43조(역에 입장한 후 나올 경우의 승차권 취급) ① 개표를 하고 입장한 후 동일역을 나오는 경우의 승차권 취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17.12>

1. 보통권, 우대권은 집표기에 넣어 집표처리 한다.
2. 교통카드를 집표기에 인식시켜 제25조에 의거 산정한 기본운임을 차감한 후 되돌려 준다. <개정 2004. 3. 10, 2005. 9. 26, 2006. 7. 14, 2007. 8. 14, 2017.12. 27>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에서 고객의 사정으로 최초 개표 후 10분 이내에 동일한 역을 되돌아 나오는 경우에는 환승(광역환승 제외) 및 집표처리 되지 않은 승차권만 해당운임을 반환한다.<신설 2017. 12. 27, <개정 2018. 9. 18>

제44조(개표기장애 등으로 개표되지 않은 승차권의 취급) ① 개표기의 장애 또는 정전 등으로 개표하지 못한 승차권에 대하여는 여행종료역에서 그 승차권을 개표한 후 제43조에 정하는 바와 같이 취급한다.

② 승차권이 정당하게 개표되었으나 도착역에서 자동집표기가 고장나거나 정전 또는 승차권 훼손 등으로 자동집표기로 집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신설 2017. 12. 27>

1. 보통권, 우대권, 단체권은 회수한다.<신설 2017. 12. 27>
2. 교통카드를 이용한 여객이 후속 교통수단과의 환승할인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제4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취급한다. <신설 2017. 12. 27>

제45조(열차운행 불능시의 여객운송) ① 열차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불통구간을 지나는 여객운송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객이 다른 교통수단으로 불통구간을 여행하고 그 구간에 대한 운임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것을 승낙한 때에는 불통구간을 지나는 승차권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승차권을 개표한 후 열차운행 불능 또는 열차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제57조를 적용한다.

제46조(승차권의 표시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급) ① 승차권의 표시사항이 불분명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는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은 이를 역에 제출하고 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운임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여객에게 고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제55조제1항의 운임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0>

제47조(잘못 승차한 경우의 취급) 여객이 잘못 승차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소지한 승차권의 통용기간 내에 한하여 집표기 또는 개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

제48조(여객운송의 거절) 여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열차승차를 거부하거나 계속승차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06. 7. 14>

1. 전염병 환자
2. 열차내 또는 역에서 고성방가를 하거나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여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자
4. 신체 과다노출로 풍기를 문란시킨 자 <개정 2006. 7. 14>
5. 신체에 오물 등을 묻히거나 심한 악취를 풍겨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염려가 있는 자 <개정 2006. 7. 14>
6. 유효한 승차권을 가지지 않았거나 승차권 검사를 거부 하는 자
7. 공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차내, 역 등에서 여객 또는 공중에 대해서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 또는 배부하거나 기타 연설, 권유 등의 행위를 한 자 <신설 2004. 3. 10>

제49조(승차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의 취급) ① 여객이 여행도중 또는 여행종료역에서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무표여행으로 취급하고 제52조 및 제53조에 정한 운임과 부가금을 받는다. 다만, 여객이 미리 신고하여 분실한 것이 인정될 때에는 부가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경우 여객은 분실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여객운임요금영수증 하단에 “분실증명서”라 기입하여 이를

발행한다.

③ 여객이 분실한 승차권을 찾았을 경우에는 분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과 분실증명서를 역에 제출하고 운임 및 부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분실증명서 1건에 대하여 별표 2의 제1호에서 정하는 반환 수수료를 받는다.

④ 여객이 여행개시 전에 승차권의 분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7. 14>

제 2 절 구간초과 등의 취급 <개정 2004. 3. 10>

제50조(구간초과) 삭제 <개정 2004. 3. 10, 2007. 8. 14>

제51조(구간초과의 취급) 삭제 <개정 2004. 3. 10, 2007. 8. 14>

제7장 여객운임의 추징 및 반환

제 1 절 운임의 추징

제52조(부가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정한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합산하여 받는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미리 신고한 때에 한하여 여행구간에 상당하는 운임만을 받는다. <개정 2004. 3. 10, 2006. 7. 14>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임적용 지역내에 무단히 입장하였거나 여행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
2. 보통권 또는 우대권으로서 제36조에 의하여 승차권을 무효로 하여 회수하였을 때
3. 청소년 교통카드, 어린이 교통카드, 우대 교통카드, 우대권 또는 할인권 등을 사용할 자격이 없는 자가 사용하였을 때<개정 2004. 3. 10, 2004. 4. 29, 2005. 9. 26, 2007. 8. 14, 2017. 12. 27>

4. 제44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승차권의 개표를 하지 아니 하고 여행하였을 때
 5. 승차권을 검사할 경우에 이를 제시하지 않았거나 승차권의 집표에 불응하였을 때
 6. 단체여객이 단체권에 기재된 인원을 초과하여 여행하였거나 단체어린이 인원중에 일반이 포함되었을 때 그 초과인원 또는 일반 <개정 2007. 8. 14>
 7. 청소년 교통카드, 어린이 교통카드, 우대 교통카드, 우대권 또는 할인권 등을 사용하는 여객이 제34조에 의한 신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제시를 거절하였을 때<신설 2017. 12. 27>
- ② 제1항 제3호에 의한 경우에 운임 및 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용시킨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운임 및 부가금을 받을 경우에는 여객운임요금영수증을 발행한다.
 - ④ 개표 후 집표 시까지 2시간을 초과한 승차권을 소지하였을 때에는 기본운임을 추가로 받는다.
 - ⑤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운임 및 부가금을 받을 경우에는 현금이 없거나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운임 및 부가금을 지불할 수 없는 여객에 대해서는 신분을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 3. 21>

제53조(승차역이 불분명한 무표여객에 대한 조치) 삭제 <2007. 8. 14>

제 2 절 운임의 반환

제54조(여행보류) ① 여객은 소지하고 있는 승차권이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역에 제출하고 운임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개표한 승차권의 경우 제43조 제2항에 의한다.

<개정 2004. 3. 10, 2017. 12. 27>

- ② 제1항에 의한 운임의 반환 시는 당해 승차권의 적용운임을 확인한

후 동일금액을 반환처리한다. <개정2007. 8. 14, 2017. 12. 27>

③ 제48조에 의하여 공사가 여객의 운송을 거절한 경우에는 발매한 승차권의 운임을 반환한다. <개정 2007. 8. 14>

제55조(승차권의 표시사항이 잘못되었거나 운임이 변경되었을 때의 반환) ① 여객이 승차권을 구입한 때 또는 여행개시 전에 표시사항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승차권을 회수하고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보통권은 이의 재발급을 청구하거나 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삭제 <2004. 3. 10>

④ 운임인상 전에 구입한 보통권은 이를 회수한 다음 인상된 운임과의 차액을 받고 새로운 승차권을 발급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며 여객이 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다.

제56조(도중역에서 여행을 개시하거나 중지한 경우의 반환) 여객이 승차권에 표시된 승차구간의 도중역에서 여행을 개시하거나 여행을 종료한 경우에는 승차하지 않은 구간에 대한 운임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7조(개표 후 열차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의 반환) ① 승차권을 개표한 후 열차운행 불능 또는 열차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운임을 반환하거나 보통권을 교부하고, 여객은 비상게이트를 이용하게 한다.<개정 2006. 7. 14>

1. 보통권을 소지한 여객에게는 그 승차권을 회수하고 회수한 승차권과 같은 운임을 반환하거나 보통권 1매를 교부한다.

2. 교통카드를 소지한 여객에게는 현금 또는 보통권 1매를 교부한다.
<개정 2004. 3. 10, 2005. 9. 26, 2006. 7. 14, 2007. 8. 14>

② 열차가 지연되어 여행중지 역에서 목적지로 출발할 열차가 없을 때에는 제1항에 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운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운임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

와 같이 승차권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1. 무임으로 되돌아 온 여객은 도착역에서 청구

2. 기타 여객은 여행 중지역에서 청구

⑤ 공사의 귀책사유로 열차내 지연이 발생하여 여객이 일정시간 이상 역에 하차 하지 못한 경우에 대체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대체교통비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04. 3. 10>

⑥ 사고 등으로 열차가 5분이상 지연되었을 때 여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연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4. 3. 10>

제58조(3일 이상 열차운행 중지로 인한 교통카드의 반환<개정 2005. 9. 26>) ① 삭제 <개정 2004. 3. 10, 2005. 9. 26, 2006. 7. 14>

② 삭제 <개정 2004. 3. 10, 2006. 7. 14>

제59조(승차권을 잘못 구입한 경우의 처리) ① 여객이 착오로 승차권을 잘못 구입하였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인정될 때에 한하여 정당한 승차권으로 교환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경우에는 여객운임의 부족액은 추징하고 과잉액은 반환한다.

제 8 장 휴 대 품

제60조(휴대금지품) ①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개정 2006. 7. 14>

1. 별표 4에서 정한 위험품 또는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동물(다만,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로써 용기에 넣어 휴대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는 경우와 장애인을 보조하는 인도견은 제외한다)<개정 2017. 8. 10>

3. 불결 또는 악취 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개정 2017. 8. 10>

4. 전차선등에 접촉될 경우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알루미늄 풍선 등)<개정 2017. 8. 10>

5. 삭제<2017. 8. 10>

② 휴대품 중에 휴대금지품이 들어 있을 것으로 의심이 갈 때에는 그 물품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을 때에는 그 포장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휴대품의 내용을 점검할 경우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여객의 휴대품이 열차 내에서 넘어지거나 충격으로 파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여객이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61조(휴대제한품) ① 여객은 제60조에 의한 휴대금지품 이외에 각변의 길이의 합계가 150cm를 초과하거나 1개의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다만, 휠체어, 유모차, 접힌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 8. 10>

② 삭제<2017. 8. 10>

1. 삭제<2017. 8. 10>

2. 삭제<2017. 8. 10>

제62조(휴대금지품 또는 휴대제한품을 가지고 승차하였을 경우의 처리) 여객이 제60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대금지품 또는 제61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대제한품을 휴대하고 승차한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별표 2』의 제2호에서 정하는 휴대품 부가금을 받는다.

제 9 장 보 칙

제63조(운임의 신고)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4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5>

이 규정은 2004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4. 29>

이 규정은 200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9. 26>

이 규정은 200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 14>

이 규정은 2006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21>

이 규정은 200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14>

이 규정은 2007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24>

이 규정은 201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29>

이 규정은 201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광주도시철도1호선 역병변경에 따른 일괄정비지침)

이 규정은 2013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7. 25 >

이 규정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8. 10 >

이 규정은 2017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27 >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27 >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9. 18 >

이 규정은 2018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3 >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06. 7. 14, 2007. 3. 21, 2007. 8. 14, 2013. 9. 26>

역 간 거 리 표

역 간 거 리																		
소 태	1.1	2.0	2.9	3.6	4.2	5.2	5.8	7.0	7.7	8.3	9.2	10.3	11.0	13.9	15.0	16.1	16.8	18.6
학동·증삼사입구	0.9	1.8	2.5	3.1	3.1	4.1	4.7	5.9	6.6	7.2	8.1	9.2	9.9	12.8	13.9	15.0	15.7	17.5
남광주	0.9	1.6	2.2	3.2	3.2	3.8	5.0	5.7	6.3	7.2	8.3	9.0	11.9	13.0	14.1	14.8	16.6	
문화전당 (구도청)	0.7	1.3	2.3	2.9	4.1	4.8	5.4	6.3	7.4	8.1	11.0	12.1	13.2	13.9	15.7			
금남4가	0.6	1.6	2.2	3.4	4.1	4.7	5.6	6.7	7.4	10.3	11.4	12.5	13.2	15.0				
금남5가	1.0	1.6	2.8	3.5	4.1	5.0	6.1	6.8	9.7	10.8	11.9	12.6	14.4					
양동시장	0.6	1.8	2.5	3.1	4.0	5.1	5.8	8.7	9.8	10.9	11.6	13.4						
역 돌고개	1.2	1.9	2.5	3.4	4.5	5.2	8.1	9.2	10.3	11.0	12.8							
농 성	0.7	1.3	2.2	3.3	4.0	6.9	8.0	9.1	9.8	11.6								
화 정	0.6	1.5	2.7	3.4	6.3	7.4	8.5	9.2	10.0									
범 레 쌍 촌	0.9	2.0	2.7	5.6	6.7	7.8	8.5	10.3										
명 운 천 (호남대입구)	1.1	1.8	4.7	5.8	6.9	7.6	9.4											
상 무	0.7	3.6	4.7	5.8	6.5	8.3												
김대중컨벤션 센터(마루)	2.9	4.0	5.1	5.8	7.6													
공 항	1.1	2.2	2.9	4.7														
송정공원	1.1	1.8	3.6															
광주송정역	0.7	2.5																
도 산	1.8																	
평 동																		

※참고사항 : 녹동간이역 ~ 소태역 : 1,871m 역간거리에서 제외

1구간: 2구간:

[별표 2] <개정 2006. 7. 14, 2017. 12. 27>

제1호 : 반환 수수료

내 용	수 수 료	비 고
1. 보통권	50원	
2. 단체권	50원	
3. 분실증명서에 의한 반환	50원	

제2호 : 휴대품 부가금

내 용	부 가 금	비 고
1. 휴대금지품 가. 위험품 나. 위험품이외의 휴대금지품	100,000원 일반 보통여객운임의 10배	
2. 휴대제한품	일반 보통여객운임	

[별표 3] 삭제 <2004.3.10>

[별표 4] <개정 2017. 8. 10.>

□ **휴대금지품** (제60조제1항1호관련)

종 류	품 목 별 내 역
화약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폭약·화공품과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질
고압가스	섭씨 50도 미만의 임계온도를 가진 물질, 섭씨 50도에서 30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진공을 0으로 하는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물질, 섭씨 21.1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거나 섭씨 54.4도에서 73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을 가진 물질이나, 섭씨 37.8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가스압력(진공을 0으로 하는 가스압력을 말한다)을 가진 액체상태의 인화성 물질
인화성 액체	밀폐식 인화점 측정법에 따른 인화점이 섭씨 60.5도 이하인 액체나 개방식 인화점 측정법에 따른 인화점이 섭씨 65.6도 이하인 액체
가연성 물질류	○ 가연성고체: 화기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점화되며 화재를 조장할 수 있는 가연성 고체 ○ 자연발화성 물질: 통상적인 운송상태에서 마찰·습기흡수·화학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발열하거나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그 밖의 가연성물질: 물과 작용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산화성 물질류	○ 산화성 물질: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유기과산화물 외의 것 ○ 유기과산화물: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독물류	○ 독물: 사람이 흡입·접촉하거나 체내에 섭취한 경우에 강력한 독작용이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살아 있는 병원체 및 살아 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거나 병원체가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방사성 물질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이나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방사능의 농도가 킬로그램당 74킬로벵퀼(그램당 0.002마이크로큐리) 이상인 것
부식성 물질	생물체의 조직에 접촉한 경우 화학반응에 의하여 조직에 심한 피해를 주는 물질이나 열차의 차체·적하물 등에 접촉한 경우 물질적 손상을 주는 물질
마취성 물질	객실승무원이 정상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극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이 있는 물질이나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질
총포·도검류등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
기타유해물질	화학변화 등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열차 안에 적재된 물건에 물질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